

이달의 법령정보

■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시행

| 법령명 | 공포 일자 | 시행 일자 | 주요내용 | |
|--|-----------|---------------------------|---|---|
| | | | 종전 | 현행(개정) |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17호) | '23.09.12 | '24.03.13 | ·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 (제19조제11항 개정) | - 허가권자는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 이종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
| | '23.09.12 |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조례 제개정 이후 적용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 높이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우도록 함 · 높이 10미터 이하 : 1.5미터 이상 · 높이 10미터 초과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 '23.11.1 | '24.03.13 | ·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관련 세부사항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3항~제6항 신설) | - 허가권자, 감리자, 협회는 건축사보가 이종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토록 함 - 이중배치 알림 승인권자 및 수탁기관 정함 |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20호) | '24.3.19 | '24.3.19 | · 소형주택 30제곱미터 미만 요건 폐지 및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요건 신설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 -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19호) | '24.3.19 | '24.3.19 | ·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용적을 완화(제85조제3항제1호 개정) | -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 '24.3.21 | '24.3.21 | · 물막이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확대 (제17조의2제1항 개정) |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건축법」 (법률 제19846호) | '23.12.26 | '24.03.27 | · 주거용 건축물 거실 설치 금지 관련 (제53조제2항 신설) |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파란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0호) | '24.03.26 | '24.03.27 |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상습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구체화 (제9조의2 신설) | - 상습 침수 우려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및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 함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418호) | '24.04.16 | '24.07.17 | ·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27조제2항 신설) | -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봄 |
| 「건축법」 (법률 제20037호) | '24.01.16 | '24.04.17 |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관련 (제22조제4항제6호의2 신설) | -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한 것으로 봄 |
| 「한국건축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6호) | '24.04.19 | '24.04.19 | ·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관련 (제2조제4항 신설, 별표1,2 개정) | -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1,2에 반영함 |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의장국 업무 수행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프라킷 파나누라타나 태국건축의회 사무총장이 인수인계 후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3월 26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에서 태국건축의회(ACT, Architect Council of Thailand)와 인수인계식을 갖고,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의장국 업무를 공식 개시했다.

인수인계식에는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장인 조인숙 건축사와 태국건축의회 프라킷 파나누라타나 사무총장, 태국건축의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살아왓 프라서트위타야란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인수인계가 이뤄짐에 따라 협회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의장국 임기를 맡게 됐다.

본협회 김재록 회장은 “이번 의장국 업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건축계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APEC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만큼, 2025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APEC등록건축사 프로젝트는 200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건축서비스 제공 장벽 완화 및 건축사 이동 촉진을 위한 기술·자격의 상호인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21개 APEC 국가 중 14개 국가가 참여해 2년에 한 번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2회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이사국은 모두 14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이 소속돼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2024년도 ‘원장·센터장·위원장 합동간담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9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도 원장·센터장, 위원장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장, 센터장, 위원장 위촉장 수여 ▲협회 일반현황, 2024년도 위원회 조직 및 운영지침 보고 ▲2024년도 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과 운영방안 협의 등이 진행됐다.

김재록 본협회장은 “위원회는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년도는 예년보다 한 달 이르게 위원회가 진행된 만큼 협회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 수행과 협회 발전을 위해 위원회에서 기초를 닦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건축사대회·아시아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등이 신설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2024 AIA 플로리다 디자인 어워드',
대한민국 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올해 미국건축사협회(AIA) 플로리다주 주최로 열리는 '2024 AIA 플로리다 디자인 어워드'의 심사가 특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 이건설 건축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4월 22일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건축사들이 제출한 다양한 작품들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건설 건축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부문 대표인 정용교 건축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 (주)서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의 김정민 건축사, (주)제협건축사사무소의 박종대 건축사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국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AIA 플로리다의 디자인 어워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글로벌 건축 커뮤니티 내에서 한국의 위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설 위원장은 "이번 한국에서의 심사는 한류 건축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사됐으며, 심사위원 구성은 중진과 신진 건축사가 조화롭게 이뤄졌다. 이번 심사가 양국의 건축 문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사결과는 플로리다 AIA의 주요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 같은 해외 건축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 건축의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국내 건축계의 발전과 국제적 위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지역건축사회, 경기지체장애인협회에 후원금 전달

경기도건축사회 용인지역건축사회는 3월 6일 '경기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전 회장과 용인지역건축사회 김중기 전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용인지역건축사회는 해마다 경기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 후원해 오고 있다.

용인지역건축사회 윤의식 회장은 "용인지역건축사회 회원들과 전 회장님들의 지역을 위한 활동은 우리 협회가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용인지역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월간 건축사'를
기존 종이우편물 대신 '디지털우편물(이메일)'로
받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이우편물 대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예전처럼 종이우편물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우편물수령'을 선택해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스마트폰 앱 서비스에 이어 올 6월부터 '디지털우편발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종이우편물 수령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물을 원치 않는 회원분께서는 협회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우편수령 여부를 아래와 같이 '미수신'으로 직접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종이 우편물을 원하실 경우 다시 '우편물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종이 사용 절감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우편물 제작·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감 비용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 우편 발송 여부 선택 방법

-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회지수신선택'에서 ●미수신으로 직접 변경
- 신문의 경우 'PDF 이메일 수신' 선택 가능(건축사지는 저작권법상 PDF파일 공유가 불가합니다.)